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강형민 전화 02-2204-4201	보 도 자 료 2020. 10. 14.(수)

제 목	택배기사 취업알선 빙자 사기 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1조 제1항)

- **서울동부지방검찰청 환경·보건범죄전담부**(부장검사 하담미)는 **택배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서민들을 대상**으로 **안정적인 대기업 소속 택배기사 취업 알선을 빙자**하면서 **탑차 개조비용을 부풀린 화물차를 구입**하게 하여 **피해자 1,894명으로부터 합계 523억 원을 편취**한 **물류회사 운영자를 구속 기소**하고, 물류회사 직원, 자회사 대표, 차량개조업체 운영자 등 **23명을 불구속 기소**하였음
-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고소사건(피해자 1명)에 대한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물류회사와 차량개조업체 관련자들이 공모하여 택배기사 취업을 미끼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수많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을 편취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 전모를 밝혀내었음

1 피고인

- 피고인 A○○(38세), 물류회사 및 13개 자회사 실질운영자
- 피고인 B○○(24세), 물류회사 영업사원
- 피고인 C○○(37세) 등 20명, 각 물류회사 자회사 대표
- 피고인 D○○(60세), E○○(58세), 각 차량개조업체 운영자

※ [별첨1] 「피고인별 범행내용 및 처분결과」 참조

2 공소사실 요지

- 피고인들은 택배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냉동탑차로 개조한 화물차를 구입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냉동탑차 개조비용을 부풀린 금액으로 캐피탈회사와 화물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, 차량개조업체가 허위 견적서를 캐피탈회사에 제출하면 캐피탈회사로부터 개조비용을 지급받아 부풀려진 금액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,

'18. 1. ~ '19. 11. 인터넷 구인·구직사이트에 대기업 택배회사 인사담당자를 가장하여 택배기사를 모집한 뒤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배송직에 취업 시켜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**피해자 1,894명**으로 하여금 캐피탈회사와 **개조 비용이 부풀려진 냉동탑차 할부계약 합계 523억 원** 상당을 **체결**하게 하여 **[사기]**

[구체적 공소사실]

▶ **물류회사**는,

- 인터넷에 대기업 택배회사 인사담당자 등을 가장하여 **택배기사 모집 광고**
- 택배회사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들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취업을 위해서는 **냉동(또는 내장)탑차로 개조한 화물차가 필요하다고 거짓말**
- 캐피탈회사를 소개하여 냉동(또는 내장)탑차로 개조한 화물차에 대해 약 2,800만 원에 할부(또는 리스)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
- 할부대금 2,800만 원은 신차 가격 1,600만 원 및 개조비용 1,200만 원 합산액이고, 그 중 **개조비용 1,200만원은 통상 액수보다 600만 원가량 부풀린 것**으로 추후 **차량개조업체로부터 위 600만 원 상당을 분배**받기로 약정

▶ **차량개조업체**는,

- 위와 같이 **개조비용을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캐피탈회사에 제출**하여 개조비용 약 1,200만 원 수취
- 그 중 **부풀린 비용 약 600만 원을 물류회사 관련자들에게 분배**

▶ 결국, **피해자**들은 안정적인 **택배회사에 취업하지도 못하고** 개조비용이 부풀려진 **고액의 화물차 할부대금 채무만 부담**

※ [별첨2]「택배기사 취업알선 사기 사건 개요도」 참조

3 수사 경과

- ’19. 7. 30. 서울송파경찰서, 고소사건(피해자 1명) 혐의없음 의견 송치
- ’19. 8.~’20. 4. 물류회사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, 관련자들 조사 등
- ’20. 4. 24. 물류회사 및 13개 자회사 실질운영자 A○○ 구속 기소, 영업사원 B○○, 자회사 대표 C○○, J○○ 불구속 기소
- ’20. 8. 21. 차량개조업체 운영자 D○○, E○○, 자회사 대표 F○○ 등 7명 불구속 기소
- ’20. 9. 29. 자회사 대표 J○○ 등 14명 불구속 기소
- ’20. 10. 14. 자회사 대표 X○○ 불구속 기소

4 수사 의의

- 피고인들은 13개에 이르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인터넷 구인·구직사이트에 반복적으로 구인광고를 게재하고, 대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회사명에 대기업 계열사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였으며, 사무실에서 대기업 택배회사의 로고가 노출되는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기망
- **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, 외국인, 여성이 다수 포함된 피해자들**은 수입이 안정적인 대기업 택배기사로 취업시켜 준다는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냉동탑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**결국 취업도 되지 않고 고액의 할부대금 채무만 부담하게 되어 피해 극심**
-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고소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 회사 사무실 압수수색, 계좌추적 등을 통해 물류회사와 차량개조업체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**피해자 총 1,894명으로부터 합계 523억 원을 편취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어 주범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23명을 불구속 기소**하는 등 **서민생활침해사범 엄단** ▨

[별첨1] 피고인별 범행내용 및 처분결과

연번	피고인(나이)	구분	피해자 (명)	피해금액 (할부금, 원)	처분 결과
1	A○○(38)	물류회사 실질운영자	1,894	523억	4. 24. 구속 기소 (10. 6. 보석허가)
2	B○○(24)	물류회사 영업사원	1	0.2억	4. 24. 불구속 기소
3	C○○(37)	자회사 대표	53	14.8억	4. 24. 불구속 기소 8. 21. 불구속 기소
4	D○○(60)	차량개조업체 대표	694	192억	8. 21. 불구속 기소
5	E○○(58)	차량개조업체 대표	1200	334억	〃
6	F○○(31)	자회사 대표	6	1.7억	〃
7	G○○(37)	〃	69	18.8억	〃
8	H○○(38)	〃	55	14.9억	〃
9	I○○(48)	〃	38	10.3억	〃
10	J○○(40)	〃	120	33억	4. 24. 불구속 기소 9. 29. 불구속 기소
11	K○○(여, 37)	〃	78 27	21억 7.3억	9. 29. 불구속 기소
12	L○○(40)	〃	108	29억	〃
13	M○○(37)	〃	102	28억	〃
14	N○○(62)	〃	13	3.5억	〃
15	O○○(64)	〃	13	3.5억	〃
16	P○○(38)	〃	12	3.3억	〃
17	Q○○(24)	〃	14	3.8억	〃
18	R○○(37)	〃	158	44억	〃
19	S○○(37)	〃	58	15.9억	〃
20	T○○(36)	〃	252	70억	〃
21	U○○(38)	〃	52	14억	〃
22	V○○(38)	〃	508 53	140억 14.8억	〃
23	W○○(38)	〃	85	23억	〃
24	X○○(44)	〃	11	3억	10. 14. 불구속 기소

[별첨2] 택배기사 취업알선 사기 사건 개요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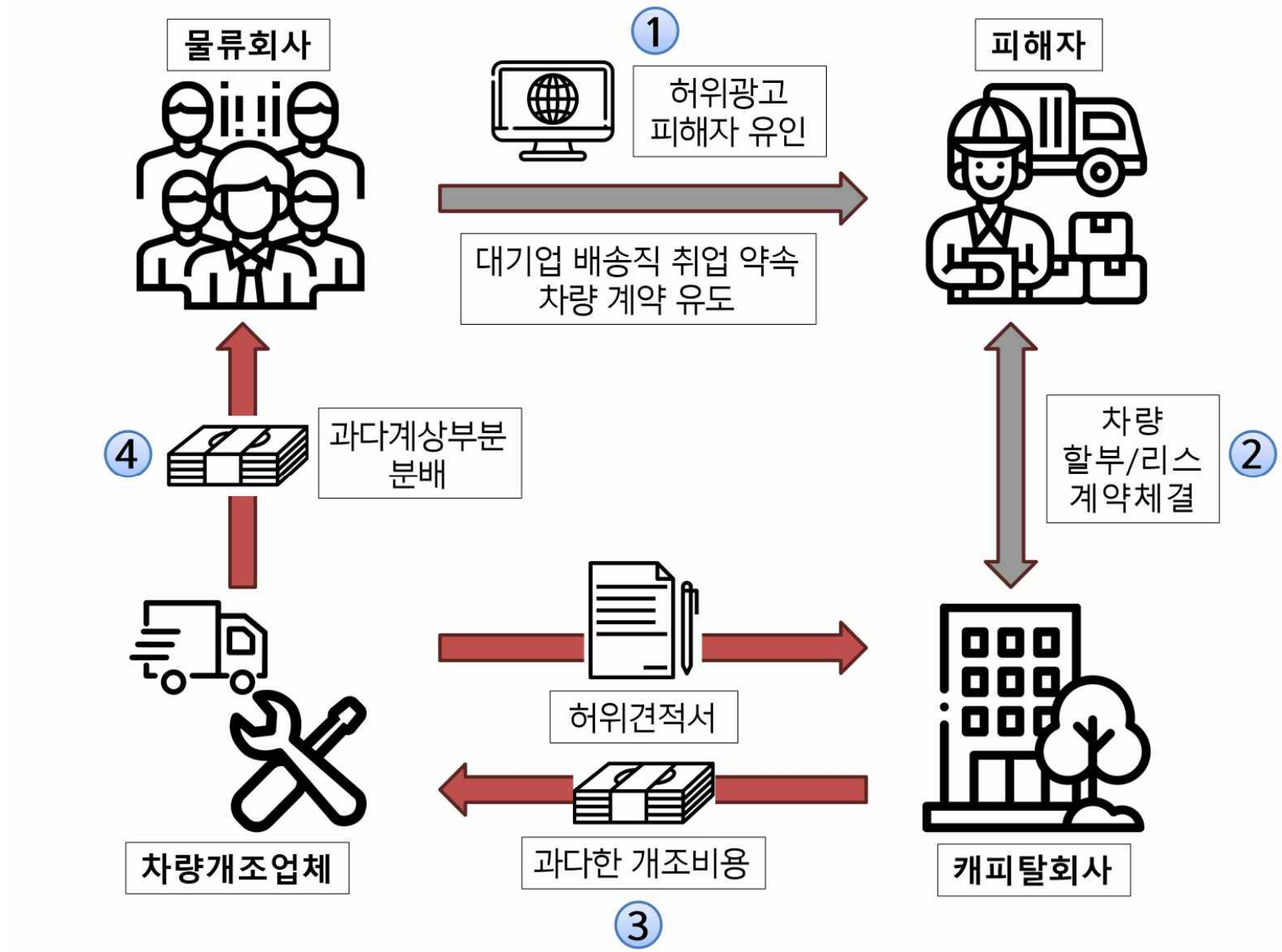

이미지 : Flaticon.com